

## 일반직원재심위원회 규정

제정 : 1996. 9. 1.

개정 : 2013. 12. 9.

**제1조**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제79조제2항에 의거 일반직원 재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19>

**제2조** (재심위원회 설치)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둔다.

**제3조** (재심위원회 구성) ① 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.
2.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.
3. 법인이사

**제4조** (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)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.

-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** (재심청구) ① 일반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** (재심위원회 심사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

- ② 재심위원회는 제 1 항의 재심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**제7조** (재심의 범위)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.

**제8조** (기일지정통지)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

청구인에게 재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통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 1 항의 통지를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 (재심청구인 진술권)**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재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.

③ 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재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재심청구의 취하)**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재심위원회의 결정)**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.

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간여하지 못한다.

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.

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,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** (재심심사결정서 작성)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.
2. 결정주문.
3. 결정이유의 개요.
4. 증거의 판단.

**제13조** (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)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 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재심심사결정서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**제14조** (위원수당등)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** (재심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중 이사장이 임명한다.

**제16조** (운영세칙)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재 심 청 구 서

인 적 사 항	성 명	한 글		소 속		직위(급)	
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재직기간	
	주 소						
재 퇴 심 는 청 처 구 분 의 의 대 상 내 이용							
재 심 청 구 의 취 지							
재 심 청 입 구 증 의 내 이용 유							
<p>위와 같이 일반직원 심사의결을 요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월      일</p> <p>일반직원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		